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7. 임의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6.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4.9.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3) 상정 ·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5. 9. 1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의자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

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기타 사항

없 음